

간호대학원 내규

제정 2008.09.01
개정 2009.11.10
개정 2010.05.19
개정 2011.06.14
개정 2013.03.27
개정 2017.08.04
개정 2018.10.18
개정 2020.09.14
개정 2023.01.01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2조에 의거하여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학과 및 전공의 설치) 간호대학원에 다음의 학과와 전공을 설치한다.

임상간호학과 : 임상전문간호전공, 노인전문간호전공, 감염관리전문간호전공

간호교육학과 : 간호학전공

제 2 장 입학 및 전공

제 3 조(입학전형) ① 입학전형은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.

② 이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입학원서
2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
3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4. 수학계획서
5. 재직 및 경력증명서
6. 간호사 면허증 사본

제 4 조(전형방법) 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.

- ② 서류전형의 평가 항목은 학부전공 관련성, 지원자의 학부 성적, 실무경력으로 구성한다.
- ③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학문적 적성·인성, 수학계획 및 진로방향을 평가한다.
- ④ 입학전형은 아래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.

서류전형		면접전형		계	
학부전공 관련성	학부성적	실무경력	학문적 적성·인성		수학계획 및 진로방향
10	20	20	25	25	100

- 제 5 조(입학전형위원회)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.
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3 장 교과과정 및 학사관리

제 6 조(교과과정) 교과과정은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논문(청구자에 한함)으로 한다.

제 7 조(교과목 담당교수) 교과목의 강의 및 실기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교내·외의 부교수이상의 교원
2. 교내·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
3.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4. 각종 학술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
5. 기타 간호대학원장이 자격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 8 조(개설과목 최소인원) 개설과목의 최소 등록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조(예비수강신청) 다음 학기 학생들의 등록여부,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, 신상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학기 종료직전 소정의 양식으로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 10 조(수업평가) 학기 종료 직전 개설된 과목에 대하여 재학생들에 의한 수업평가를 실시한다.

제 4 장 장학금

제 11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) ① 이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면허증 소지자 장학금 :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입학시 학과별로 아래와 같이 학비를 감면한다.
 - 가. 임상간호학과: 수업료의 30% 학비감면
 - 나. 간호교육학과: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% 학비감면
2. 간호장학금: 아래의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.
 - 가. 범 위 : 각 학과의 직전학기 정규 등록생의 10%의 인원
 - 1) 임상간호학과: 수업료의 50% 학비감면
 - 2) 간호교육학과: 수업료의 70% 학비감면
 - 나. 1학기 입학시에는 간호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.
 - 다. 2학기 간호장학금 대상자는 각 학과의 전학기(1학기) 성적 우수자로 한다.
 - 라. 3학기, 4학기 간호장학금 대상자는 각 학과의 대표로 하되, 대표의 성적이 해당 학과 성적의 상위 40%내에 있어야 한다. 만일 대표의 성적이 상위 40%밖인 경우에는 그 학과의 성적 우수자를 간호장학금 수여자로 선정한다.
 - 마.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현재 직장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하며 이 사항도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늦은자로 한다.

바. 간호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.

3. 외부장학금은 교외에서 유치한 장학금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급한다.

제 12 조(장학금 지급 유효기간) 장학금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에 한한다.

제 5 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

제 13 조(외국어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.

② 외국어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시행한다.

제 14 조(종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교과목은 간호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호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한다.

제 15 조(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은 1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

② 종합시험은 전공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다.

③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은 순서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.

④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직전학기까지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16 조(응시절차 및 방법)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17 조(출제 및 평가) ①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배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.

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, 과점수로 후 재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.

제 18 조(학위과정 수료자의 등록금 환불)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 등의 이유로 수료 후 등록을 하고, 외국어시험이나 종합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한다.

제 6 장 학위청구논문

제 19 조(논문지도과정 절차) 논문지도과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
1. 논문지도신청서 제출
2. 논문지도교수 배정
3. 논문지도 ; 개별지도 또는 통합지도
4. 학위논문작성계획서의 제출
5. 학위논문작성계획서의 공개발표 및 심사

제 20 조(논문지도 신청자격) 전공교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 후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.

제 21 조(논문지도 신청) ① 논문지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논문구상을 하여 학위논문지도신청서 I<서식 3>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초 논문지도등록을 하고 학위논문지도신청서II<서식 4>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2 조(논문심사 절차)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
1.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
2.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3. 예비심사
4. 본심사 및 구술시험

제 23 조(논문심사 신청자격)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해당학기에 전공수료학점 이수예정
2.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 3.0이상
3. 외국어시험 합격
4. 종합시험 합격

제 24 조(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) ① 학생은 해당학기 2개월 이내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심사 희망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서<서식 5> 1부
2.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추천서<서식 6> 1부
3. 석사학위청구논문 4부.

제 25 조(논문심사위원회) ① 간호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
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담당한다.

③ 간호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제 26 조(논문의 심사)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본 심사는 구술시험을 병행한다.

제 27 조(예비심사) ①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.

② 예비심사는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,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·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.

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요지<서식 7>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한다.

⑤ 심사위원장은 석사학위논문예비심사 결과통보서<서식 8>에 심사위원들의 예비심사요지를 첨부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, 간호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논문의 수정·보완 사항을 지시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본 심사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.

제 28 조(본 심사 및 구술시험) ①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수정·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.

② 구술시험은 본 심사와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에 관련된 구술시험을 행한다.

③ 심사위원들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요지<서식 9>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 논문심사의 판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고,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 29 조(심사결과 보고) ① 심사위원장은 해당 학기의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, 석사학위 논문 심사결과종합통보서<서식 10>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간호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간호대학원장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간호대학원 학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합격자에 대한 학위수여여부를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결정한다.

③ 간호대학원장은 제2항의 의결과 논문의 심사요지 및 구술시험 결과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0 조(학위논문 제출) 본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,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된 논문 3부(양장본)를 간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졸업시험

제 31 조(응시자격) ①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4학기이상 정규등록
2.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2학점 이상 취득
3. 외국어시험 합격

② 직전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32 조(응시절차)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 원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3 조(시행일자) 졸업시험은 매년 5월말과 11월말에 시행한다.

제 34 조(실시방법) ① 졸업시험의 과목은 간호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.

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 과정수료 후 재 응시할 수 있으며, 졸업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.

④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 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부 칙

①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②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③ 이 내규는 2010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④ 이 내규는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 간호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수료, 졸업, 재학중인 학생도 건강교육및간호관리전공 학생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이 내규는 2017년 8월 4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내규는 2018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
- ② (전공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 간호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수료, 재학중인 학생도 간호학전공 학생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